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0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21C 고령화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적인 노인복지의 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안 제2조)
- 나.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노인상담사업, 노인취업알선사업, 노인사회교육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후생사업, 노인건강지원사업 등으로 한다.(안 제3조)
- 다.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안 제4조)
- 라.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안 제5조1항)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이 있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5조2항)
- 마.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안 제7조)

바.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안 제12조)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파주시 금능동 230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 관리) 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의 위탁)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 부담 능력이 있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6조 (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운영) ①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의 보조) 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대상) ①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2. 기타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으로 파주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기준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지도 감독) ①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940-4402
입 안 자	사회복지과장	김 태 회
	가정복지담당	김 선 옥
	담 당 자	최 연 경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21C 고령화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일환
으로 노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노인
들의 사회참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적인 노인복지의 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2조)

-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노인상담사업, 노인취업알선사업, 노인사회교육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후생사업, 노인건강지원사업 등으로 한다. (안 제3조)
-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안 제4조)
- 노인복지회관 운영위탁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제1항)
-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이 있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배치를 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2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안 제7조)
-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12조)

3. 노인복지회관 현황

□ 설치목적

- 21세기 고령화사회 진입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 및 노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
- 아울러 주민숙원사업인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 문화 및 생산적 노인복지 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명 :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 위치 : 파주시 금능동 230번지
- 대지면적 : 10,066.64㎡(3,045.15평)
- 사업비 : 6,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1월 ~ 2004. 10월
- 시설현황
 - 건물면적 : 4,179.69㎡(약 1,264평)
 -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3층
 - 세부현황

구 분 층 별		면 적	이 용 시 설
계		1,264.35	
지하	1층	322.08	공동작업장, 노인용품전시장, 이·미용실, 자원봉사자실, 체력단련실, 서예실, 도서실, 공조실, 기계실
지상	1층	334.07	대강당, 방송실, 다목적홀(전시실), 사무실, 관장실, 노인회지회 사무실
	2층	324.95	물리치료실, 양호실, 세탁실, 주간보호실, 강의실, 비디오감상실, 다목적소강당(노래방, 스포츠댄스실)
	3층	283.25	경로식당, 교육실, 컴퓨터교실, 소강당, 강의실, 장기, 바둑실, 강사대기실
옥상			게이트볼장, 휴게공간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준공에 대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파주시 금능동 230번지 상에 약 1,264평 규모로 지난 2002년 1월 동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구분에 따라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으로 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상담사업 및 취업알선사업, 노인사회교육사업, 복지후생사업, 건강지원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회관의 사업내용을 포함한 회관의 업무와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동 회관을 직접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방법을 명시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동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운영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운영시설과 인력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면제규정이 간결하지 못해 일부 조문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함.
- 또한 사용료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조례안에서는 1·2호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동 조문은 단서 조항으로 간결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고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동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와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여 수탁자로부터 협약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오는 10월말 준공예정인 파주시노인 복지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사전에 동 회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여짐.
- 특히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8.7%이며 우리시의 노인 인구도 전체인구의 약 9.8%로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확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고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됨.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38
----------	-------------

제안년월일 : 2004년 4월 9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1. 수정이유

- 일부 조문 중 뜻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노인 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면제규정이 간결하지 못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중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 안 제10조제2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로 하며,
- 안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를 “(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시설 아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로 함.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중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으로 한다.

안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를

“(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로 한다.

[별표]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대 강 당	오전	50,000 08시-12시	○ 토, 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포함)작업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오후	60,000 13시-18시	
	야간	70,000 18시-22시	
	1 일	100,000	
소 강 당	오전	40,000 08시-12시	
	오후	50,000 13시-18시	
	야간	60,000 18시-22시	
	1 일	9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소 강 당	1회 (2시간)	35,000원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비	고
제4조 (운영 관리)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u>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관리)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u>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관리)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u>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u>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대상) ① 생략 ② 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대상) ① 생략 ② 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대상) ① 생략 ② 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신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제11조 (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신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제11조 (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